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1조(예산의 과목 구분) 및 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주요항목은 분야·부문·정책사업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며,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 공무원은 여비,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한다고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'20~'22년 기간 중 도청 매점 온라인쇼핑몰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스마트워치, 로봇청소기 등 OO개 품목 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후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팀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적 사용

사례2> PC모니터 보안필름 OO개를 구매 계약 후 O개만 납품받고 OO개를 납품받은 것처럼 대금 0,000천원을 결제하고 OO개는 현금으로 돌려받아 000만원을 횡령

사례3> 회식을 위한 음식 등을 마트에서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담당 팀장이 이를 변제하기 위해 사무용품 구입 명목으로 허위품의를 낼 것을 직원에게 지시하였고, 이에 담당 직원은

문구점에 카드 결제 후 대금 일부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
방식으로 회식비용 충당

사례4> 사무관리비를 법인카드로 수차례에 걸쳐 결제하고 물건을 수령
하지 않고 있다가 문구점 대표에게 부탁하여 개인용 태블릿
PC를 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령

사례5> 사무관리비로 골프용품 및 의류 상품권 등 000만원 상당의
물품을 구입 후 사적 사용

사례6> 도청 매점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사무관리비로 베개, 이불,
수저, 화장품 등 0개 품목 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후
사적 사용

사례7> 평소 거래하던 문구점에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허위
결제를 하고 실제로는 0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구입
후 사적 사용

사례8> 사무관리비로 000만원 상당의 휴대폰 0대를 구입 후 본인 및
배우자가 사적 사용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회계담당자는 사무관리비 집행 시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도록
면밀히 검토하고 사적 횡령·유용의 여지가 없도록 확인할 것